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58회 정례회

검토보고서

2022. 9. 23(금)

순서	검 토 안 건	제 안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청장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준상)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보고자 : 전문위원 유준상)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O 제출자: 구청장

O 제안일: 2022. 9. 5.

O 회부일: 2022. 9. 13. (의안번호: 22-87)

2. 제안이유

○ 2022년 11월 준공 예정인 아현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이 2개의 법정동(아현동, 염리동)으로 나뉘어 있어 이를 1개의 법정동으로 경계를 조정하여 입주민의 편의 증진과 각 종 공부 관리 등 행정업무 처리 효율성 증대를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염리동 8의 106번지 외 37필지 4,780.80㎡를 아현동으로 편입 하고자 하는 것임.

4. 관계법령

- O 「지방자치법」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 칭과 구역)
-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제9조의2 (자치구 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관할구역 경계변경)

5. 검토보고

○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11월 준공 예정인 아현제2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이 2개의 법정동(아현동, 염리동)으로 나뉘어 있어 이를 1개의 법정동으로 경계를 조정하여 입주민 의 편의 증진과 각종 공부 관리 등 행정업무 처리 효율성 증 대를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O 주요내용으로는

염리동 8의 106번지 외 37필지 4,780.80㎡를 아현동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것임.

O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동명칭 및 구역획정 변경 연혁표를 보면 14번째 변경 실시하는 것으로 2022년 11월 준공 예정인 아현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이 2개의 법정동(아현동, 염리동)으로 나뉘어 있어 이를 1개의 법정동으로 경계를 조정하여 입주민의 편의 증진과 각종 공부 관리 등 행정업무 처리 효율성 증대를 목적으로 「지방자치법」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됨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두 개동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며, 발생비용 또는 재원조달 등이 일어나지 않고,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별표 1] <u>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연혁표(제3조 관련)</u>

구분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사항	비고
	아현동, 공덕동, 신공덕동, 도화동, 용강동, 토정동, 마포동, 대흥동, 염리동, 노고산동, 신수동, 구수동, 현석동, 창전동, 상수동, 하중동, 신정동, 하수동, 당인동, 동교동, 서교동, 합 정동, 망원동, 연남동, 성산동, 중동, 상암동	제정 1988. 5. 1.
개정연혁 1	 동명 중 하수동을 폐지한다. 망원동 28번지를 서교동에 편입한다. 망원동 중 동교로길과 합정동 동남쪽 지역을 합정동에 편입한다. 	개정 1989. 5. 29.
개정연혁 2	대흥동 745번지를 용강동에 편입한다.	개정 2003. 9. 25.
개정연혁 3	아현동 400번지, 401번지를 공덕동에 편입한다. 아현동 649의1번지 내지 649의33번지를 공덕동에 편입한다. 구수동 107번지를 신수동에 편입한다. 성산동 490의19번지, 490의20번지, 491번지, 491의3번지, 492의1번지, 492의3번지, 492의5번지 내지 492의12번지, 492의14번지, 492의19번지, 492의21번지, 493번지, 493의3 번지, 494의1번지, 494의5번지, 494의7번지, 494의8번지, 494의10번지 내지 494의15번지, 495번지, 495의1번지, 산51 의4번지, 산53의46번지, 산53의47번지를 상암동에 편입한다.	개정 2005. 3. 25.
개정연혁 4	하중동 1의1번지, 1의2번지, 2번지, 3의1번지, 3의2번지, 3의 3번지, 3의4번지, 3의5번지, 17의2번지, 29의18번지, 29의20 번지를 창전동에 편입한다.	개정 2007. 10. 5.
개정연혁 5	도화동 1의276번지, 1의277번지, 1의278번지, 1의279번지, 1의280번지, 1의281번지, 1의283번지, 1의284번지, 1의285번지, 1의286번지, 1의287번지, 1의288번지, 1의289번지, 1의290번지, 1의351번지, 1의354번지, 1의356번지, 1의357번지, 1의358번지, 1의359번지, 1의360번지, 1의361번지, 1의362번지, 1의363번지, 1의364번지, 1의365번지, 1의366번지, 1의367번지, 1의368번지, 1의369번지, 1의370번지, 1의371번지, 1의372번지, 1의373번지, 1의374번지, 1의375번지, 1의376번지, 1의391번지, 1의392번지, 1의393번지, 1의394번지, 1의395번지, 1의396번지를 신공덕동에 편입한다.	개정 2008. 11. 13.

구분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사항	비고
개정연혁 6	신정동 153번지, 신정동 153의1번지, 신정동 153의2번지를 하중동에 편입한다.	개정 2010. 10. 14.
개정연혁 7	아현동 457의64번지, 아현동 457의69번지, 아현동 457의71 번지, 아현동 457의78번지, 아현동 457의80번지, 아현동 457 의81번지, 아현동 457의82번지, 아현동 457의93번지, 아현동 457의124번지, 아현동 650의60번지를 공덕동에 편입한다.	개정 2011. 6. 9.
개정연혁 8	합정동 416의1번지부터 합정동 416의5번지까지, 합정동 416의7번지, 합정동 416의8번지, 합정동 416의10번지부터 합정동 416의26번지까지, 합정동 416의30번지, 합정동 416의32 번지부터 합정동 416의34번지까지, 합정동 416의37번지부터 합정동 416의48번지까지, 합정동 416의53번지, 합정동416의67번지, 합정동 416의68번지, 합정동 417의1번지부터 합정동417의17번지까지, 합정동 417의23번지부터 합정동417의42 번지까지, 합정동 417의45번지부터 합정동417의49번지까지, 합정동 417의55번지, 합정동418의1번지부터 합정동418의31번지까지, 합정동418의33번지부터 합정동418의36번지까지, 합정동418의31번지까지, 합정동418의31번지까지, 합정동419의10번지까지, 합정동419의12번지부터 합정동419의16번지까지, 합정동419의18번지부터 합정동419의33번지부터 합정동419의29번지까지, 합정동419의33번지부터 합정동419의25번지부터 합정동419의39번지부터 합정동419의42번지하지, 합정동419의39번지부터 합정동419의42번지까지, 합정동419의39번지부터 합정동419의42번지까지, 합정동419의39번지부터 합정동419의42번지까지, 합정동419의39번지부터 합정동419의42번지까지, 합정동419의39번지부터 합정동419의42번지까지, 합정동419의51번지, 합정동421의4번지를 서교동에 편입한다.	개정 2012. 6. 7.
개정연혁 9	염리동 14의404번지, 염리동 14의405번지, 염리동 24의1번지부터 염리동 24의65번지까지, 염리동 24의88번지부터 염리동 24의91번지까지, 염리동 24의96번지, 염리동 24의9111번지부터 염리동 24의115번지까지, 염리동 24의122번지부터 염리동 24의127번지까지, 염리동 24의133번지부터 염리동 24의135번지까지, 염리동 24의138번지, 염리동 24의168번지, 염리동 24의169번지, 염리동 24의177번지,염리동 24의178번지, 염리동 24의180번지, 염리동 27의211 번지, 공덕동 122의19번지를 아현동에 편입한다.	개정 2014. 7. 24.
개정연혁 10	염리동 159의 25번지, 염리동 160의 1번지부터 염리동 160의 20번지까지, 염리동 160의 22번지, 염리동 160의 25번지부터 염리동 160의 45번지까지, 염리동 160의 47번지, 염리	개정 2015. 7. 23.

구분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사항	비고
	동 160의 49번지부터 염리동 160의 56번지까지, 염리동 160의 58번지, 염리동 160의 61번지부터 염리동 160의 67번지까지, 염리동 160의 70번지부터 염리동 160의 83번지까지, 염리동 160의 85번지를 공덕동에 편입한다.	
개정연혁 11	신수동 430의 5번지, 신수동 445의 22번지, 신수동 445의 24번지, 신수동 445의 27번지, 신수동 446의 3번지, 신수동 446의 9번지부터 신수동 446의 10번지까지, 신수동 448의 37번지, 신수동 448의 41번지, 신수동 448의 45번지, 신수동 449의 1번지부터 신수동 449의 17번지까지, 신수동 449의 19번지, 신수동 449의 23번지부터 신수동 449의 25번지까지, 신수동 449의 54번지부터 신수동 449의 52번지까지, 신수동 449의 54번지부터 신수동 449의 55번지까지, 신수동 449의 59번지부터 신수동 449의 61번지까지, 신수동 449의 63번지부터 신수동 449의 66번지까지를 현석동에 편입한다.	개정 2015. 12. 31.
개정연혁 12	염리동 150의 2번지, 염리동 150의 7번지부터 염리동 150의 8번지까지, 염리동 151의 6번지부터 염리동 151의 14번지까지, 염리동 151의 44번지를 공덕동에 편입한다.	개정 2020. 7. 9.
개정연혁 13	아현동 350의 58번지부터 아현동 350의 62번지까지, 아현동 350의 73번지, 아현동 350의 84번지, 아현동 354의 52번지, 대흥동 2의 85번지, 대흥동 3의 43번지부터 대흥동 3의 46번 지까지, 대흥동 3의 48번지부터 대흥동 3의 52번지까지, 대흥동 3의 55번지부터 대흥동 3의 59번지까지, 대흥동 3의 62번지, 대흥동 3의 65번지부터 대흥동 3의 72번지까지, 대흥동 3의 75번지부터 대흥동 3의 80번지까지, 대흥동 3의 82번 지부터 대흥동 3의 84번지까지, 대흥동 3의 86번지부터 대흥동 3의 98번지까지, 대흥동 3의 86번지부터 대흥동 3의 98번지까지, 대흥동 3의 100번지부터 대흥동 3의 106번지까지, 대흥동 3의 109번지부터 대흥동 3의 115번지까지, 대흥동 4의 1번지부터 대흥동 4의 3번지까지, 대흥동 4의 6번지, 대흥동 4의 8번지부터 대흥동 4의 10번지까지, 대흥동 4의 12번지부터 대흥동 4의 13번지까지, 대흥동 5의 1번지부터 대흥동 5의 6번지까지, 대흥동 6의 1번지부터 대흥동 6의 2번지까지, 대흥동 6의 4번지, 대흥동 6의 6번지부터 대흥동 6의 7번지까지, 대흥동 6의 9번지부터 대흥동 6의 14번지까지, 대흥동 8의 4번지까지, 대흥동 8의 4번지까지, 대흥동 8의 4번지까지, 대흥동 8의 4번지까지, 대흥동 28의 41번지, 대흥동 28의 45번지부터 대흥동 28의 49번지까지, 대흥동 28의 57번지, 대흥동 30의 15번지까지, 대흥동 28의	개정 2020.12.31.

구분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사항	비고
	흥동 30의 17번지부터 대흥동 30의 26번지까지, 대흥동 30의 29부터 대흥동 30의 30까지, 대흥동 30의 37번지부터 대흥동 30의 38번지까지를 염리동에 편입한다.	
개정연혁 14	역리동 8의 106번지부터 염리동 8의 141번지까지, 염리동 9의 261번지, 염리동 14의 277번지를 아현동에 편입한다.	개정 2022.10.20.

[별표 2]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行政面)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 ④ 동 · 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 · 리를 2개 이상의 동 · 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 · 리를 하나의 동 · 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 · 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관할구역 경계변경)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토지의 개발·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해 사업지구의 토지가 둘 이상의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읍·면·동에 걸치게 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의 완료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을 신청했을 때에는 법 제7조제1항 단서에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조서
- 2.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 3. 행정구역 변경도